

## 개인 무능력자 후견인 서비스 흔히 제기되는 문제들

### 회계 기록 심사

- 전체 회계(소책자 A와 B)이든 부분 회계(소책자 A)이든 회계 기록 심사용 선서 진술서나 법정 선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선서 진술 입회관(Commissioner for taking Affidavits)이 서명하고 공증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는 회계 기록 패키지와 함께 저희 사무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누구나 요약 소책자 A(양식1)에 있는 점검 목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제출자는 회계 기록에 필수 서류가 전부 들어 있는지 더욱 쉽게 확인하고 공공 후견청은 제출물을 더욱 신속하게 심사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문 회계사 이용

- 회계 기록 유지는 무능력자 후견인(committee)의 여러 중요 책임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재산 관리 회계가 너무 복잡하면 전문 회계사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서비스의 타당한 요금은 의뢰인의 재산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 공동 명의 은행 계좌

- 무능력자 후견 대상자와 공동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공동 계좌는 대개 생존자 소유권(right of survivorship)을 수반합니다. 이는 무능력자 후견 대상자가 사망하면 전체 계좌가 무능력자 후견인에게 귀속된다는 뜻입니다. 무능력자 후견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재산에서 이득을 취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해당 은행 계좌를 무능력자 후견 대상자“를 위한 신탁용”으로 또는 무능력자 후견 대상자“를 위한 무능력자 후견인용”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 신탁의 권익 공개

- 무능력자 후견 대상 성인이 신탁의 수혜자인 경우, 무능력자 후견인은 자신의 무능력자 후견인 회계가 만기가 될 때 그 신탁에 대한 성인의 권익과 관련이 있는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금 및 기타 혜택 신청

- 무능력자 후견 대상 성인이 연금이나 기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무능력자 후견인은 그를 대신하여 이 같은 수입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PGT 수수료 지급

- 회계 심사료를 낼 때 수표의 수취인을 “Public Guardian and Trustee”(공공 후견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무능력자 후견인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 무능력자 후견인 핸드북(Private Committee Handbook)에 수록되어 있으며, 다음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trustee.bc.ca/reports-and-publications/Pages/default.aspx](http://www.trustee.bc.ca/reports-and-publications/Pages/default.aspx).